

‘앱스토어’는 과연 애플만의 브랜드인가?

<http://www.etnews.co.kr/201101120126>

애플이 소유한 ‘앱스토어’ 상표권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동을 걸었다. 애플리케이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앱스토어 개념이 애플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MS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앱스토어 상표권이 일반 명칭이며 경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PC월드·레지스터 등이 11일(현지시각) 전했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앱스토어를 ‘인터넷, 컴퓨터 및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소매상점 서비스’로 규정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아이폰’을 위한 앱스토어를 열어 30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애플리케이션 장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애플은 이달 초 맥PC를 위한 ‘맥 앱스토어’도 선보였다.

이에 대해 MS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고, ‘스토어’는 소매상점 서비스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라고 주장했다. 또 애플 최고 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마존, 버라이즌, 보다폰은 모두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체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들어 애플 자신도 앱스토어를 일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S는 “소비자와 업계, 미디어들이 모두 앱스토어를 애플리케이션이 판매되는 온라인 상점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을 애플이 배타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말 원도폰7 운영체계(OS)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했다. IDC는 마켓플레이스에 두 달 만에 4,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됐다고 집계했다.

황지혜기자 golit@etnews.co.kr

업체별 애플리케이션 장터 동향

업체	애플리케이션 장터 이름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애플	앱스토어
RIM	앱월드
마이크로소프트	마켓플레이스
노키아	오비스토어
HP	앱카탈로그
삼성	삼성앱스

전 소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리사

○]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애플은 ‘APPSTORE’ 상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명사처럼 사용하는 ‘APPSTORE(애플스토어)’가 애픸의 상표권 범위에 속한다면 현재 ‘애플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및 개인들은 애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과연 한국과 미국에서 애픸이 영문 형태의 ‘APPSTORE’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는지 조사해 보았다.

먼저 미국에서 애픸이 ‘APPSTORE’ 상표권을 확보에 성공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았다. 미국상표청(<http://tess2.uspto.gov/>)의 검색창에서 owner name에 ‘apple’과 mark index에 ‘store’를 ‘and’ 조합으로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APP STORE’가 현재 미국상표청에 출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PP STORE’의 법적 상태는 2008년 7월 17일에 출원을 완료한 후 2009년 12월 1일자로 공고결정(Publication) 후 2010년 7월 7일자로 이의신청(Opposition)이 개시된 상태로 나타나 있다.¹⁾ 이의신청인이 누구인지는 미국상표청 웹사이트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MS사 또는 MS사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가진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까지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출원 후부터 공고결정 전까지 많은 법적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어쨌든 공고결정이 한 번 난 것으로 보아 미국상표청은 애픸의 손을 먼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애픸이 ‘APP STORE’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닐까? 상표법은 ‘속지주의’라는 것을 취하고 있어 미국에서 상표가 등록되

APP STORE

Mark Name Goods and Services	U.S. 777482 47 SOC. CLS. 9(2007) 47 SOC. CLS. 28(2007). FIRST USE IN COMMERCE: 2008/07/10 47 SOC. CLS. 35(2007). FIRST USE IN COMMERCE: 2008/07/10 47 SOC. CLS. 42(2007). FIRST USE IN COMMERCE: 2008/07/10
Standard Character Combined Mark Drawing Logo Drawing	(S) STANDARD CHARACTER MARK
Serial Number	777482
Registration Date	July 17, 2008
Current Filing Date	TA
Initial Filing Date	TA
Class	16 AGD
Published for Opposition	January 5, 2010
Owner	APPLE INC. CORPORATION; CALIFORNIA; 1 Infinite Loop Cupertino CA 95014 USA
Attorney	Levitt & Voigt
Recorded	March 1, 2008
Priority Date	2008/07/10
International Filing	NO
Specification	NO
Design	NO
Type of Mark	SERVICE MARK
Registered	PRINCIPAL 20%
Last Modified	LIVE

〈미국상표청 ‘APP STORE’ 서지사항 검색 결과 화면〉

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별개로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상표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는 없다. 철저히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APP STORE’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따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 조사 결과, 애픸은 다음과 같이 ‘STORE’를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표는 하기 표 중 5번 ‘APPSTORE(띄어쓰기 없는 형태)’와 6번 ‘APP STORE(띄어쓰기가 있는 형태)’이다. 5번과 6번은 띄어쓰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상표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5번과 6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함께 살펴보아야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다음 글에서는 애픸의 ‘APP STORE’와 ‘APP STORE’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겠다.

1)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를 출원하고 나면 그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독점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관에 의한 1차 심사가 원료된 상표에 대해서는 출원공고결정을 내린다. 출원공고 결정 후에는 공중에게 신사를 맡겨 출원한 상표의 등록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출원한 상표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야 비로소 등록결정이 되며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원전히 자신이 독점하는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번호	견본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광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누선권수상번호	상태	상종분류	도면코드	출원인
1 ITUNES STORE	920553 (2007.02.01)	4120080054742 (2008.09.09)		1311676 (2006.08.03)	광고 38 41 42 3 5	77388365 (2008.02.04)	등록 37 41 42			애플 인크. Apple Inc.
2 APPLE STORE	973841 (2006.03.11)	4120090039029 (2009.02.02)	410191610000 (2009.11.13)			77388365 (2008.02.04)	등록 37 41 42			Apple Inc.
3 APPLE STORE	983222 (2006.02.27)	4120070012379 (2007.02.28)	4101478540000 (2007.04.24)				등록 35			Apple Computer, Inc.
4 BOOKSTORE	4520100001847 (2010.05.09)			41873 (2010.01.25)	출원 09 35					애플 인크.
5 APPSTORE	90450 (2006.12.13)			78907865 (2006.06.14)	포기 42 35					Apple Inc.
6 APP STORE	4120080024498 (2008.09.11)						거절 38			애플 인크.

〈애플이 보유한 'STORE' 포함 상표 리스트-www.kipris.or.kr 발췌 화면〉

우선, 상기 5번과 6번의 최종 상태는 5번은 '포기' 상태로 나와 있고, 6번은 '거절' 상태로 나와 있는데 '포기'라는 것은 출원인 스스로 절차를 종료한 의사를 밝힌 것이며 '거절'은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포기'나 '거절'은 법적으로 선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후에 누군가 'APPSTORE'를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해도 포기되거나 거절된 상표로 인해 거절될 염려는 없다. 5번의 경우는 애플이 마드리드 국제등록출원을 통해 2006년 12월 13일자로 출원을 진행했으며, 미국출원 No.78907865 'APPSTORE'을 기초로 하였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출원은 여러 국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데 기초출원이 소멸(거절결정되거나 포기된 경우 등)될 경우 다

른 나라를 지정한 출원도 함께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기초출원의 법적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상표청에서 No.78907865 'APPSTORE'를 검색한 결과, 이 상표는 2006년 6월 14일에 출원되어 2008년 12월 5일자로 포기되었는데 그 사이 미국상표청은 출원인에게 수 차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가 2008년 7월 24일자로 공고결정을 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며(아마도 미국 APP STORE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인일 것이라 추측됨) 그 후 애플은 이 상표는 포기하였다. 미국에서 이 상표를 포기함에 따라 한국에서 출원한 마드리드 출원인 5번 상표도 자동적으로 소멸하였는데 5번 상표는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상표 출원 절차도 종료하게 되었다. 애플이 5번 상표를 포기함과 동시에 'APPSTORE'에 대한 상표권 확보를 일견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8년 7월 17일, 미국에 'APP STORE (No.77525433)'을 출원하였고, 2008년 9월 11일 동일한 상표 'APP STORE'를 우리나라에 개별로 출원한 것으로 보아 'APP STORE'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달리 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 출원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애플이 'APP STORE'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냐 여부는 그 거절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의 거절사유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5번이 소멸되기 전에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5번 상표에

대해 가거절 통지서를 보낸 사유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심사관은 " 'APP STORE'는 컴퓨터 프로그

APPSTORE

Mark Name Goods and Services	APPSTORE (ARMEDCOM) I2 642 (5-100-101) G & S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featuring computer software in the field of business, branch management, business knowledge, information and asset management,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ales, marketing, performance, electronic messaging and web site development
Standard Character Classes	
Mark Drawing Code	01 STANDARD CHARACTER MARK
Serial Number	78907865
First Filing Date	June 14, 2006
Current Filing Status	拒
Original Filing Date	May 26, 2006
Published for Opposition	August 26, 2006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092046
Attorney of Record	LEWIS CLARK Law Corporation, Inc., CORPORATION (DELAWARE) The Loamman @ One Market Street #700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3
Type of Mark	Service mark
Region	PERIODICAL
Live/Dead Indicator	DEAD
Assignment Date	December 5, 2006

(2) Regarding all the designated goods, the mark lacks the distinctiveness to enable consumers to recognize those goods it indicates under the Trademark Act, 6(1)(vii).

Where a mark is used by many people or there it is unfair to grant exclusive rights to one person for a mark in view of public interest, the mark shall be regarded to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marks stipulated in Article 6(1)(vii) of Korean Trademark Act, that does not enable consumers to recognize whose goods it indicates under the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Article 12.

The term 'APPSTORE', which has the meaning of a place for selling APP, a kind of a computer program, does not seem to have any distinctiveness in light of social common view, and it is unfair to grant exclusive rights to one person for the mark in view of public interest.

Accordingly, it is decided that the proposed mark 'APPSTORE' lacks the distinctiveness to enable consumers to recognize whose goods it indicates.

〈국제출원 No.909450 APPSTORE 가거절 통지서 중 일부 발췌 화면〉

램을 일컫는 'APP'을 판매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6번 상표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거절이유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다음은 6번 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중 일부 내용이다.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출원인명: 애플(주) (출원인코드: 81909005386)
대리인명: 특허법인 홍우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날강빌딩 11층(특허법인 홍우)
자체변리사: 권성혁 외 1명

출원번호: 41-2008-0024409

상품(서비스명): 제 35 그룹 포함한 3개류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상표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를 평지하였으나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답변, 소정)서(상표 등록 제거 제기 제1호 서식) 또는 보정·보완서(상표 등록 제4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애휘 1월 단위로 총 2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

1.0 출원서비스표는 'APPSTORE'는 'app(애플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ape(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장치'라는 뜻으로 자장 서비스를 전문으로 사용할 경우 상점(음료, 제공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하며, 'APP'는 컴퓨터 등의 풍자표로 그림으로 지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형상적으로 다수인이 사용하여 일관성있게 누구의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인지 찾을할 수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상표출원 No.41-2008-0024409 APP STORE 의견제출 통지서 중 일부 발췌〉

즉, 상기 5번에서의 거절이유와 동일한 이유로서 'APPSTORE'는 역시 'APP(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상점'이라는 뜻으로 직감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APPSTORE'는 다수인이 널리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을 허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6번 상표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09년 12월 1일자로 거절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며, 애플 측은 이에 대해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미국의 경우 'APP STORE'에 대해 미국상표청은 공고결정을 내려 주었고 이에 대해 2010년 7월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이며, 오늘 기사에 따르면 MS사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APP STORE는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표장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기 'APP STORE'에 대해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청구가 제기된 상태라 'APP STORE'에 대한 상표권 확보를 위해 애플은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 현재 호주와 네덜란드에서는 'APP STORE'에 대한 최종 등록이 마쳐진 상태라 각국마다 'APP STORE'를 애플이 독점 보유하게 될지 여부는 그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인데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앱스토어'는 특허청이 바라본 대로 '앱(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공간, 가게' 정도의 의미로 쉽게 인식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일반수요자들도 '앱스토어'가 애플의 상표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상호를 붙여 '네이버 앱스토어', '아이디어앱스토어', 'DAPPSTORE' 등의 형태로 출원을 하고 있으며 웹상에서도 '앱스토어'라는 말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에서의 'APP STORE'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한국에서의 심판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IT 업계는 MS사가 제기한 '앱스토어' 미국 상표 분쟁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 11 |